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제도 개선

유럽 연합은 소속 국가들이 유럽에서 단일 특허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새로운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일에 착수하였다. 현재 유럽 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연구원들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경우에 처하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의 정책 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 유럽 평의회(Europe Council)는 특허체계를 일련화 된 과정으로 만듦으로써 좀 더 감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허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1년 말에는 유럽에서 단일화된 특허체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에서 하나의 통합된 특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사는 대략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특히 연구/개발 정보교환 분야에서 두드러진 일이지만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1977년 한 사람이 통합적 유럽 특허 제도를 처음으로 주장한 후 지금까지 약 100만 건의 유럽 특허가 출원되었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등과 관련된 유전자를 구성해 가는가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대표적인 실험동물인 생쥐(mouse)의 유전자정보 해독에도 착수하고 있고, 인간과의 비교 데이터를 갖출 계획이다.

일본, 미국, 유럽 정부의 「국제 사람 게놈계획」은 1990년에 착수해, 해독한 유전정보가 인간의 염색체의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보다는 상세한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는 2005년 완료 예정이었지만, 셀루라의 매진으로 자극을 받아, 목표를 「2003년까지」로 앞당겼다. 금년 6월까지 「draft」로 불리는 개략정보가 완성될 예정이다.

위 계획의 해석결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만, 셀루라는 해독 데이터를 대량으로 특허 상표청에 기출원하고 있다. 이들 특허가 성립하면 국제계획으로 얻어진 데이터의 일부에 대해서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연구자 사이에는 경계도 확대되고 있다. 위 계획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셀루라의 해독성과를 넣는 안도 있지만, 양자의 교섭은 암초에 걸려 있다. 셀루라는 모아진 데이터를 이미 제약회사에 우선적으로 유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람 게놈 계획의 총책임자인 미국립 위생연구소의 연구자는 「셀루라의 성과는 놀랍지만, 해명해야만 할 것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5일, 유전정보의 기초적인 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이 상업용도를 명확히 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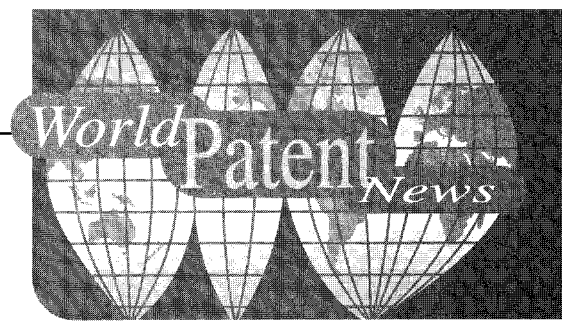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사람의 유전자 정보 해독 완료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회사인 셀루라·제노믹스사는 정부 프로젝트의 완료예정보다 약 2년 반 빨리 인간의 전 유전정보(게놈)를 구성하는 약 30억 개의 염기배열을 해독했다. 모아진 데이터는 화학기초의 배열로, 제노믹스사는 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체내에서 병

1999년 미국 최고의 특허 등록 업체인 IBM사

◎ IBM사는 지난 1999년에 미국 최고의 특허 등록 업체가 되었다고 한다. IBM사의 2756 건의 특허는 모두 높



은 수준의 핵심 특허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830개의 특허가 IBM사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서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로써, IBM사는 연속 7년 동안이나 최고의 특허 등록 업체라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다. ④ 1998년에 IBM사는 미국 최초로 2000개의 특허를 등록한 업체가 되었다. 이 중 750건이 IBM사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1999년에 IBM사에 의해 출원된 특허를 보면,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가 단연 돋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SOI(Silicon-on-insulator) 기술과 리토그래피 기술과 같은 반도체 핵심 기술 특허가 여기에 속한다. ⑤ IBM사는 SOI 반도체 공정 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었다. SOI 기술은 고성능, 저전력, 소형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IBM사의 5,930,643번 특허는 SOI 칩 기술과 관련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핵심 특허라고 한다. 또한 IBM사는 셀룰러 폰 등과 같은 휴대용 전자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킨 패키지 관련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온도 특성과 안정성이 좋은 BGA 패키지 관련 특허(5,900,675)가 단연 돋보인다. ⑥ 반도체 칩의 소형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회로의 배선 기술과 웨이퍼 형상 기술의 구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IBM사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리토그래피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5,862,058)는 광학 리토그래피 기술과 관련된 특허로써, 기존의 리토그래피의 특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매우 실용적인 특허라고 한다. IBM사는 비디오 신호의 화질을 선명하게 유지하면서도 인코딩 할 수 있는 세트 톱박스용 비디오 인코딩 특허(5,920,359)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터넷과 디지털 TV, 휴대용 비디오 장비 등과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 응용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특허라고 한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아시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들

④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 칩생산 공정들에 관련된 특허권에 관하여 2 회사들이 한국과 일본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내었다. 2000년 1월 4일에 제소된 회사들에는 Fujitsu, 현대전자, LG전자, Matsushita, 비즈비사전기, Advanced Display, NEC, Oki Electric, 삼성전자, 샤프, 소니, 도시바,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사와 이들의 몇몇 미국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⑤ 뉴욕주 로커스트 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 소송을 제기한 Plasma Physics Corp.사와 Solar Physics Corp.사는 소송대상이 된 회사들과 특허권 협상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회사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회사 Fish & Neave社は 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반도체 업계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공정들이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특허권 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 가지 특허기술들 중 두 가지는 프라즈마와 화학증착을 이용하는 공정들로서, 반응로에서 기술기를 갖는 전기장을 사용하는 것과 다체임버 공정을 위한 클러스터-도구 반응로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특허 기술은 박막트랜지스터(TFT) 액정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들은 현재 Plasma Physics와 Solar Physics사의 사장인 John H. Coleman의 개발의 결과라고 한다. ⑥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국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이 소송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항하고 있는 Fish & Neave 법률회사의 한 대변인은 특허권 라이선스가 부여된 회사들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해외과학기술동향〉

변리사법원의 개요

일본 특허청

2000年 3月

I. 법률개정 목적

정보나 지식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혜의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조활동(기술개발)성과인 지적재산(특허등)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활동의 구조(지적창조사이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개정)(1999년 3월 30일각의결정)에서 「국민생활의 편리성 향상, 당해업무서비스에 관계되는 경쟁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소관업무독점자격 등에 대한 업무독점규정, 자격요건, 업무범위등의 자격제도의 검토」라 기재되어 있어서, 업무독점규정·업무범위의 재검토, 법인화의 해금을 포함한 변리사제도의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의 사업화와 거래활동을 지원하는 지적재산전문서비스의 중요한 담당자인 변리사에 대해서 규제개혁에 의한 경쟁촉진, 국민에의 서비스향상관점에서 그 업무를 규제하는 변리사법(1921년 제정)의 전면적 검토를 하였다.

II. 법률안의 개요

1. 변리사의 업무범위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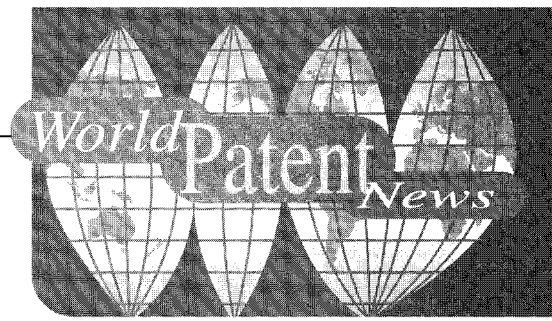
■ 이용자요구에 부응하는 지적재산전문서비스의 확대 특허청에의 절차대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변리사업무를 이하와 같이 확대.

- 지적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계약 등의 중개·대리, 컨설팅업무를 추가.
- 국제화에 대응하고 해적판등부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세관의 수입금지 신청대리업무의 추가
- 증가하는 지적재산관련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업소유권중재센터등의 전문적중재기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중재절차의 대리업무를 추가
- 중재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화해절차의 대리업무추가

※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검토예정.

■ 변리사의 독점업무의 검토

- 변리사의 독점업무를 일부축감하고, 권리확정후의 특허료납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일반에 개방.



2. 변리사시험제도의 개혁

변리사인구의 양적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제도(합격률 4%, 승격자 평균년령 약 33세)를 개혁하여, 젊은 인재의 참가를 촉진한다.

- 시험과목에 저작권법등을 추가하고, 현행 41과목인 선택과목을 재검토하여 시험내용을 간소화·합리화.
- 다른 유자격자의 일부시험면제 등

3. 종합적 서비스제공체제의 실현

-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실현, 변리사의 지역전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변리사사무소의 법인화를 해금(「특허업무법인」). 특허업무법인은 준칙주의에 의한 설립이 가능. 또한 일본에서 처음으로 법인으로서 소송관련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 법개정과 더불어 지방지소의 설치도 해금.

4. 기타

경쟁촉진에 의한 비용삭감, 국민에의 서비스향상 등의 관점에서 변리사의보수액표규정을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변리사 광고제한의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한다.

상표의 국제출원의 접수개시에 대하여
- 상표의 국제적전개가속 -

일본 특허청
2000年 3月

I. 국제출원의 접수개시

특허청은 2000年 3월 14일(화) 오전 9시부터 국제상표출원실에서 국제출원의 접수를 개시한다.

즉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정서」(「마드리드협정의정서」)에 기한 취급을 일본에서도 행하는 것이다.

마드리드협정의정서는 각국의 상표담당기관을 통하여 제네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에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희망하는 모든 체약국에서 상표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조약이다. 유럽각국을 비롯하여 44개국에 가입하고 있다.

II. 마드리드협정의정서의 장점

종래의 외국출원 각국별로 출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상표관리가 번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 출원은 각국마다 하여야 한다.
- 각국의 언어로 절차를 하여야 한다.
- 각국마다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야 한다.
- 권리취득성부까지의 기간이 각국마다 다르다.
- 상표권갱신등의 절차도 각국마다 하여야 하므로, 관리가 번잡.

예를 들면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의 3개국에 출원하는 경우 나라마다 대리인과 조약을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류는 모두 그 나라의 언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국의 기관에 절차비용과 대리인에게 제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협정의정서 절차의 간소화, 관리의 용이화, 비용의 저렴화

- 특허청을 통하여 WIPO에 국제등록출원을 한다.
- 절차언어는 영어
- 대리인선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다.
- 권리취득은 12월 또는 18일이내에 판명.
- WIPO가 관리하는 국제등록전에 의해 각국의 상표권이 일원적으로관리

상기의 예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일본특허청에 영어로 WIPO가 정하고 있는 간략하게 구성된 서류를 제출한다. 변리사에게 서류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지만, 스스로 출원하면, 특허청에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권리취득여부는 늦어도 18월이내에 판명되고, 취득한 상표권은 WIPO가 일원하여 관리한다.

동시에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브랜드전략의 국제적전개

국제적 기업경쟁에서 기업의 신용력이 브랜드로 상징되므로 상표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가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상품의 가치를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국제전략에서 상표를 중심으로 다각적 경영전략을 전개.

중·소·중견기업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노력을 전개.

마드리드협정의정서가맹은 기업노력을 백업하는 큰 수단이다.